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와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전자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당사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KSD)의 사전 일괄위임을 기준으로 당사 KDR 보유자 분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일 출석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본 공지의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등을 검토하신 후, 2019년 3월 22일 17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코오롱타워본관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보고

2) 의결사항

제 1호 의안 : 제20기 (2018.01.01 ~ 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부속정관(By-laws) 일부 변경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기타사항

1)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는 총회 소집공고에서 지정한 한국내의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2) 당사 KDR은 당사의 보통주식을 바탕으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으로, 당사 KDR의 취급 등은 당사와 KSD간의 예탁계약서에 기준합니다. 당해 예탁계약서는 KSD 글로벌서비스부 및 KSD 홈페이지([www.ksd.or.kr](http://www.ks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예탁계약서 제1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원주식 1주 미만인 KDR 4증권 이하 보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동일한 근거로, 1주당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보유하신 KDR 중 1원주식 : 5KDR의 비율로 환산시 원주식 1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4) 예탁계약서 제 34조 및 KSD의 사전 일괄위임에 의거하여 KDR 실질보유자는 아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② KSD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를 신청

③ ②의 경우, 동봉한 「의결권행사신청서」에 찬반을 표시한 후 2019년 3월 22일 (금요일)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서를 보내주시시오. 또한 기간 내에 서면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결권행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신분증

6. 본 주주총회에 관한 보고사항, 의안 및 결산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 월

**코오롱티슈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우 석, 이 범 섭

직인  
생략

■ 별첨 1 :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신청서

##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신청서

- 수신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서비스부  
 글로벌금융팀 앞 (우편번호 07330 / 팩스번호 : 02-3774-3432 / 이메일(파일형태로 송신 : kdr@ksd.or.kr)  
 \*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 1

◎회사명 : 코오롱티슈진주식회사  
 ◎주주총회일 :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9시

■ 의결권행사 신청 내역

실질소유자번호(필수기재) <sup>1</sup>	
소유증권 수	

주1) 실질소유자번호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소유자번호(필수정보)가 틀릴 시 의결권 행사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	찬성	반대
1 제20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일부 변경의 건		
3 부속정관(By-laws)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위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O 또는 V 표시를 하셔서 위의 수신처 주소(또는 팩스,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기한 : 2019년 3월 22일(금) 17:00까지)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주식예탁증권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오니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소유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별첨 2 :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0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19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Kolon TissueGene, Inc.

(단위 : USD)

과 목	제 20 기말	제 19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140,003,612	176,731,213
현금및현금성자산	18,244,010	26,735,368
단기금융상품	117,064,218	146,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16,954	922,278
재고자산	695,348	778,167
당기법인세자산	588	-
기타유동자산	3,382,494	2,295,400
Ⅱ. 비유동자산	7,229,579	2,964,233
유형자산	937,893	957,095
무형자산	5,303,600	1,055,410
기타금융자산	59,983	34,983
기타비유동자산	906,349	916,745
순확정급여자산	21,754	-
자산총계	147,233,191	179,695,446
부채		
Ⅰ. 유동부채	11,620,406	12,065,5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171,346	6,959,768
단기차입금등	5,000,000	4,500,000
기타유동부채	324,515	548,874
총당부채	124,545	56,876
Ⅱ. 비유동부채	12,825,552	18,192,96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25,398	595,151
순확정급여부채	-	97,809
장기차입금	12,500,000	17,500,000
기타비유동부채	154	-
부채총계	24,445,958	30,258,478
자본		
자본금	2,397	2,385
자본잉여금	256,303,248	253,543,21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4,595)	110,300
결손금	(133,443,817)	(104,218,929)
자본총계	122,787,233	149,436,968
부채및자본총계	147,233,191	179,695,446

**<포괄손익계산서>**

제 20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9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Kolon TissueGene, Inc.

(단위 : USD)

과 목	제 20 기	제 19 기
I. 매출액	3,440,200	2,822,887
II. 매출원가	2,200,428	1,474,242
III. 매출총이익	1,239,772	1,348,645
판매비와관리비	31,177,579	37,377,938
IV. 영업손실	(29,937,807)	(36,029,293)
기타수익	372,210	362,266
기타비용	(1,218,744)	(994,482)
금융수익	2,441,677	472,587
금융원가	(951,998)	(670,257)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9,294,662)	(36,859,179)
법인세비용	29,490	3,317,012
VI. 당기순손실	(29,324,152)	(40,176,191)
VII. 기타포괄손익	(85,630)	93,48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184,895)	110,3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9,265	(16,817)
VIII. 총포괄손실	(29,409,782)	(40,082,708)
IX.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실	(2.41)	(4.99)
희석주당손실	(2.41)	(4.99)

**<자본변동표>**

제 20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9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Kolon TissueGene, Inc.

(단위 : USD)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 액	결손금	총 계
2017년 1월 1 일 (전기초)	72,464	71,218,635	(1,285)	(64,025,921)	7,263,893
당기순손실	-	-	-	(40,176,191)	(40,176,191)
매도가능금융자 산	-	-	1,285	-	1,285
유상증자	152	181,684,953	-	-	181,685,105
우선주전환	(70,232)	70,232	-	-	-
주식선택권 행사	1	396,348	-	-	396,349
주식보상비용	-	173,044	-	-	173,04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6,817)	(16,817)
해외사업환산 익	-	-	110,300	-	110,300

2017년 12월 31 일 (전기말)	2,385	253,543,212	110,300	(104,218,929)	149,436,968
2018년 1월 1 일 (당기초)	2,385	253,543,212	110,300	(104,218,929)	149,436,968
당기순손실	-	-	-	(29,324,152)	(29,324,152)
주식선택권행사	12	2,715,263	-	-	2,715,275
주식보상비용	-	44,772	-	-	44,77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99,265	99,265
해외사업환산손 익	-	-	(184,895)	-	(184,895)
2018년 12월 31 일 (당기말)	2,397	256,303,248	(74,595)	(133,443,817)	122,787,233

### <현금흐름표>

제 20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9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Kolon TissueGene, Inc.

(단위 : USD)

과 목	제 20 기	제 19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062,753)	(34,324,775)
1. 당기순손실	(29,324,152)	(40,176,191)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3,201,067	5,048,577
이자비용	951,998	670,257
감가상각비	455,533	356,440
무형자산상각비	158,542	142,649
주식보상비용	44,031	173,043
퇴직급여	251,639	72,731
대손상각비	75,648	-
기타의대손상각비	8,079	-
유형자산처분손실	31,078	-
유형자산폐기손실	30,381	3,070
무형자산손상차손	781,647	71,557
무형자산폐기손실	909	-
재고자산평가손실	86,480	240,378
재고자산폐기손실	48,357	-
법인세비용	29,490	3,317,012
지급보증수수료	247,255	-
잡손실	-	1,440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2,318,371)	(483,066)
이자수익	(2,318,053)	(472,587)
유형자산처분이익	(318)	-
대손충당금환입	-	(10,479)
4. 순운전자본 변동	(3,564,473)	1,925,340
매출채권	75,017	368,678
기타채권(유동)	117,166	(64,051)
재고자산	(48,357)	39,863

기타유동자산	(911,315)	(1,163,621)
기타비유동자산	228,426	(279,325)
기타금융자산	(25,000)	(34,983)
당기법인세자산	(588)	-
매입채무	(120,689)	37,336
기타채무(유동)	(2,353,467)	3,222,499
기타채무(비유동)	(237,943)	(52,502)
기타유동부채	(38,721)	(401,237)
기타비유동부채	154	-
확정급여채무	(359,969)	(306,485)
정부보조금수령	110,813	559,168
5. 이자수취	1,892,681	6,021
6. 이자지급	(949,505)	(643,774)
7. 법인세납부	-	(1,68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323,313	(148,520,0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8,935,782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8,935,782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612,469)	(148,52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46,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432,324)	(294,092)
무형자산의 취득	(4,180,145)	(1,835)
사업결합	-	(2,224,073)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4,725)	190,085,55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715,275	193,085,554
단기차입금 차입	-	5,000,000
장기차입금 차입	-	6,000,000
유상증자	-	181,689,204
주식선택권 행사	2,715,275	396,35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500,000)	(3,000,000)
단기차입금 상환	(4,500,000)	(3,000,000)
IV. 외화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2,807	66,062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I + II + III + IV)	(8,491,358)	7,306,84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6,735,368	19,428,52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8,244,010	26,735,368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별첨 3 :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5절 이사회 (c) 이사의 해임	제5절 이사회 (c) 이사의 해임	구정관의 표현
우선 이사들 및 적용되는 델라웨어	우선 이사들 및 적용되는 델라웨어	명료화

<p>법률상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이사 또는 이사회 전체는 초과반수(아래 정의됨)의 찬성투표에 의해서만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임이 가능하다. 본 설립증서의 목적 상 “초과반수”란 정족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회사 주주들 중 66과 3분의 2 퍼센트(66 2/3%) (“초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는 경우, 초과반수라 함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p>	<p>법률상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이사 또는 이사회 전체는 초과반수(아래 정의됨)의 찬성투표에 의해서만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임이 가능하다. 본 설립증서의 목적 상 “초과반수”란 정족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회사 주주들 중 66과 3분의 2 퍼센트(66 2/3%) (“초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DR이 KRX에 상장되는 경우, 초과반수라 함은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를 의미한다.</p>	
<p>제5절 이사회 (h) 내규 변경</p> <p>이사회는 델라웨어 주의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에 추가하여 회사의 내규를 제정, 수정, 변경, 폐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갖는다.</p>	<p>제5절 이사회 (h) 부속정관 변경</p> <p>델라웨어 주의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에 추가하여 회사의 부속정관은 주주총회의 초과반수에 의하여 수정, 변경, 폐지될 수 있다.</p>	<p>한국 상법 준용</p>
<p>제8절</p> <p>델라웨어 주의 관련 법률 및/또는 본 설립증서(지정증서 포함)에 의해 요구되는 찬성 투표에 추가하여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DR이 KRX에 상장된 기간 중에 회사가 (1) 이사 급여(퇴직금 포함) 한도를 확정하고 (2) 법정 감사인을 선임하고 (3) 회사의 감사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4) 법정 감사인에 대한 보수(퇴직급여 포함)를 확정하고 (5) 회사의 주식(회사의 분할은 제외함. 이는 상기 제(g)항에 의하여 규율됨.)에 대한 배당을 선언 및 지급하고 (6)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찬성 투표가</p>	<p>제8절</p> <p>델라웨어 주의 관련 법률 및/또는 본 설립증서(지정증서 포함)에 의해 요구되는 찬성 투표에 추가하여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DR이 KRX에 상장된 기간 중에 회사가 (1) 이사 급여(퇴직금 포함) 한도를 확정하고 (2) 법정 감사인을 선임하고 (3) 회사의 감사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4) 법정 감사인에 대한 보수(퇴직급여 포함)를 확정하고 (5) 회사의 주식(회사의 분할은 제외함. 이는 상기 제(g)항에 의하여 규율됨.)에 대한 배당을 선언 및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찬성 투표가</p>	<p>한국 관련 법령 준용</p>

요구된다.		
-------	--	--

■ 별첨 4 : 부속정관(By-laws)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조 공고의 방법</p> <p>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주식예탁증서”)가 한국의 증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경우,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른 주주(아래 정의됨)에 대한 통지에 추가하여, 한국에서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issuegene.com)에 게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의 일간경제신문인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p>	<p>제2조 공고의 방법</p> <p>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주식예탁증서”)가 한국의 증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경우,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른 주주(아래 정의됨)에 대한 통지에 추가하여, 한국에서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issuegene.com)에 게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한국”)의 일간경제신문인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p>	<p>구 부속정관의 표현 명료화</p>
<p>제3조 주식 (6)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p> <p>d. 부속정관의 목적상 “초과반수”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초과반수”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p>	<p>제3조 주식 (6) 주식연계회사채의 발행</p> <p>d. 부속정관의 목적상 “초과반수”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초과반수”는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하여)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를 의미한다.</p>	<p>구 부속정관의 표현 명료화</p>
<p>제7조 주식매수선택권</p> <p>(1) 회사는 선택권 보유자에게 이사회가 정하는 대가 및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여하한 종류의 주식 또는</p>	<p>제7조 주식매수선택권</p> <p>(1) 본 제7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이사회(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정한 대가 및 조건으로</p>	<p>한국상법 준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규정</p>

<p>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회사의 여하한 종류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또는 지분제도(stock option or equity plan)나 계약을 채택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배정되는 주식의 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회사의 지분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주식매수선택권”)를 포함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사회(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정한 기준(성과기준 및 목적 등을 포함)으로 부여하는 지분연계보상을, 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직원과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서비스제공자와 이사회(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주식보상제도 및/또는 계약(이러한 제도 및/또는 계약을 “주식보상제도”라 함)을 채택할 수 있다.</p>	<p>명확화</p>
<p>제7조 주식매수선택권</p> <p>(2)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또는 지분제도가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른 조건과 더불어 해당 계획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해당 계획이나 계약에 의해 발행 또는 매각되는 주식의 종류 및 가격, 피용자가 인수 또는 매수하는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해당되는 경우에 따름)의 수량, 그에 대한 지급방법, 주금이 완납될 때까지의 권리 유보, 고용관계 종료의 효과, 고용관계 종료 시 회사의 해당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해당되는 경우에 따름)에 대한 매수권 또는 매수의무, 주식 양도의 제한, 계획의 시한 및 종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제7조 주식매수선택권</p> <p>(2) 만약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p> <p>a.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한국의 법령과 회사의 설립증서의 규정 및 본 부속정관은 관련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주식보상제도에 적용된다.</p> <p>b. 하나 이상의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기부되어 현존하는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회사의 주식(종류 또는 시리즈 불문) 총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종류 또는 시리즈를 불문하며 자기주식 포함)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p> <p>c.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및 그 관계회사(상법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를 말한다)의 직원,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p> <p>d. 주식매수선택권의 피부여자는 주주 또는 이사회가 한국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할 때까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한국상법 준용 및 주식매수 선택권 규정 명확화</p>

	<p>e.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주식보상제도의 조건에 따라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및 해지할 수 있다.</p> <p>(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p> <p>(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p> <p>(iii) 회사가 국내외 파산법 또는도산법에 따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해당 절차를 밟게 되거나 달리 해산·청산된 경우, 또는</p> <p>(iv) 이사회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및 해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련 주식보상제도에 정해진 조건이나 사유가 발생한경우</p>	
<p>제7조 주식매수선택권</p> <p>(3)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및 지분제도 및 회사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매수를 위한 여하한 선택권의 부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 및 설립증서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 주식매수선택권</p> <p>(3)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자면,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 상장에 더 이상 상장되지 않게 되는 경우 위 2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p>	<p>한국상법 준용 및 주식매수 선택권 규정 명확화</p>
<p>제18조 이사의 2. 이사의 수</p> <p>e. 제19조 제6항에서 정하는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모든 이사회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결의에 따라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중 2/3는 사외 이사로 하기로 한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구성원을 대체할 수 있는 1인 이상의 이사들을 감사위원회의 대체 구성원으로</p>	<p>제18조 이사의 2. 이사의 수</p> <p>e. 제19조 제6항에서 정하는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모든 이사회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결의에 따라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중 2/3는 사외 이사로 하기로 한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구성원을 대체할 수 있는 1인 이상의 이사들을 감사위원회의 대체 구성원으로</p>	<p>한국 관련 법령 준용</p>

<p>선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의에 출석하고 의결권 행사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본인(들)이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구성원을 대신하여 회의에서 행위할 이사를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사회의 모든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i) 회사의 외부감사법인의 선정(단, 설립증서 제8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찬성투표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 (ii) 회사의 외부감사법인의 해임 및 (iii) 회사의 외부감사법인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회사의 다른 외부감사법인의 선임(단, 설립증서 제8조에 따라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찬성투표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p>	<p>선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의에 출석하고 의결권 행사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본인(들)이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구성원을 대신하여 회의에서 행위할 이사를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사회의 모든 권한 및 권능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i) 독립한 회계법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 (ii) 회사의 외부감사법인의 해임 및 (iii) 회사의 외부감사법인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회사의 다른 외부감사법인의 선임.</p>	
<p>제18조 이사의 3. 선임 및 임기</p> <p>이사회(설립증서 제4조의 조항에서 규정되거나 정해진 기존 우선주식 시리즈의 보유자가 선임한 이사들(각각, “우선주식 이사”라 하고, 1인 이상인 경우 “우선주식 이사들”이라 함) 제외)는 Class I, Class II 및 Class III으로 정해진 주식과 가능한 동일한 수로 3종류의 이사로 구분된다. Class I 이사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최초로 역임하고, Class II 이사는 2019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최초로 역임하며, Class III 이사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최초로 역임한다. 2018년 정기주주총회의 개시 이후 임기가 종료하는 각 종류의 이사들은 선임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p>	<p>제18조 이사의 3. 선임 및 임기</p> <p>이사회(설립증서 제4조의 조항에서 규정되거나 정해진 기존 우선주식 시리즈의 보유자가 선임한 이사들 제외)는 Class I, Class II 및 Class III으로 정해진 주식과 가능한 동일한 수로 3종류의 이사로 구분된다. Class I 이사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최초로 역임하고, Class II 이사는 2019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최초로 역임하며, Class III 이사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최초로 역임한다. 2018년 정기주주총회의 개시 이후 임기가 종료하는 각 종류의 이사들은 선임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임기 중 사망, 사임 또는 해임이 발</p>	<p>구 부속 정관의 표현 명료화</p>

<p>직을 수행하도록 선임된다. 단, 임기 중 사망, 사임 또는 해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되어 자격을 갖추기 때까지 해당 직을 수행한다.</p>	<p>생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되어 자격을 갖추기 때까지 해당 직을 수행한다.</p>	
<p>제21조 회계 및 배당 (3) 회계</p> <p>a.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동 재무제표는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승인된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i) 재무제표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ii) 재무제표는 또한 (A) 회사가 상장한 한국거래소에 회사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를 상장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원칙 또는 (B) 당해 한국거래소의 규칙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p> <p>b.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21일 이전에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 공인회계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며, 이러한 감사보고서는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제출된다.</p> <p>c.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위 법률에 따라 독립된 감사법인을 선임하고 설립증서 제8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찬성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는다. 동 감사법인은 (i) 주주들로부터 선임된 날로부터 3년, (ii) 주주들의 의결에 의한 해임, 또는 (iii) 사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업무를 수행한다.</p>	<p>제21조 회계 및 배당 (3) 회계</p> <p>a.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동 재무제표는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승인된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i) 재무제표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ii) 재무제표는 또한 (A) 회사가 상장한 한국거래소에 회사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를 상장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원칙 또는 (B) 당해 한국거래소의 규칙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p> <p>b.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며, 이러한 감사보고서는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제출된다.</p> <p>c. 이사회는 감사의 승인에 따라, 또는 한국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위 법률에 따라, 독립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그러한 선임에 대하여 보고한다. 동 감사법인은 (i) 선임된 날로부터 3년, (ii) 주주들의 의결에 의한 해임, 또는 (iii) 사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업무를 수행한다.</p>	<p>구 부속 정관의 표현 명료화 및 한국 상법 준용</p>

■ 별첨 5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노문종	1968.03.12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노문종	Kolon TissueGene, Inc. CTO	現) Kolon TissueGene, Inc. CTO('17~) 前) Kolon TissueGene, Inc. VP of R&D('05~'17)	-

■ 별첨 6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USD 3,000,000	USD 3,000,000

■ 별첨 7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USD 500,000	USD 500,000